

(주)신한은행 공고 제2022-01호

‘JW 중외제약 화성 물류센터 신축공사 정비기반시설(도로)’ 보상계획 열람 공고

화성시 고시 제2022-666호(2022.08.31.)로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 실시 계획(변경), 지형도면 고시(시도30호선 도로확포장공사)된 ‘JW 중외제약 화성 물류센터 신축공사 정비기반시설(도로)’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토지보상법’이라 함)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,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1월 01일

(주)신한은행



1. 사업 개요

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사업의 종류 : 시도30호선 도로확포장공사
- 사업의 명칭 : JW 중외제약 화성 물류센터 신축공사 정비기반시설(도로)

나. 사업의 위치 및 규모

- 사업의 위치 : 화성시 안녕동 146-244번지 일원
- 사업의 규모

구분	규 모			폭원 (m)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							
결정 (변경)	중로	1	2	20 ~25	보조 간선	710	대로2-5 (안녕동151-66)	중로3-1 (안녕동146-266)	일반 도로	경고 제1991-398호 (1991.10.28)	
시행	중로	1	2	20 ~25	보조 간선	331	안녕동 146-244	안녕동 146-236	일반 도로		

다. 사업시행자

- 성명 : (주)신한은행
- 주소 :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46-141(중외제약)

라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3.01.31.

2. 보상계획

가. 보상대상 : ‘토지조서’ 참조

나. 보상시기 :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

다. 보상액 산정

- 「토지보상법」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3인(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)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.

라.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

- 「토지보상법」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음.
- ※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.

마. 보상절차

-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→ 보상협의 요청 → 보상계약 체결 →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(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)

바. 보상금 지급 : 전액 계좌입금(현금보상)

3.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열람기간 : 2022.11.01.(화) ~ 2022.11.15.(화)[15일간]

나. 열람장소

-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: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/ ☎ 031-5189-2467
- 보상사무실 :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, A3311호 / ☎ 031-302-3043

다. 이의신청 방법

-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.

4. 토지조서

구분	소재지 (화성시)	지번	지목	면적(m ²)		지분
				공부	편입	
토지	안녕동	146-79	전	25	25	
	안녕동	146-224	전	175	175	2/136
	안녕동	146-230	전	830	662	
	안녕동	146-236	전	91	91	
	안녕동	146-259	임야	480	427	
	안녕동	146-261	임야	211	211	
	안녕동	146-277	임야	101	101	
물건	위 토지 상에 지장물 등					

※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(고시/공고) 및 개별 통지문 참조

5. 기타사항

- 가. 지적 분할에 따라 지번(분할)이 부여될 예정이며, 사업계획(변경) 및 기타사유 등으로 보상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나.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,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- 다.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는 보상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(☎ 031-5189-2467) 또는 보상사무실(☎ 031-302-304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